

# KAIST 교원창업 안내

2022. 06. 20.

KAIST 창업지원센터장 운동선

2022 KAIST 교원창업 워크숍



# ■ Contents

**01 KAIST 창업원 소개**  
설립배경/조직구성

**02 교원창업 안내**  
교원창업 절차 및 기준

**03 교원창업 지원 프로그램**  
KEP , Lab Startup KAIST, 창업 법률상담 등

**04 교원창업 FAQ**  
교원창업 관련 주요 문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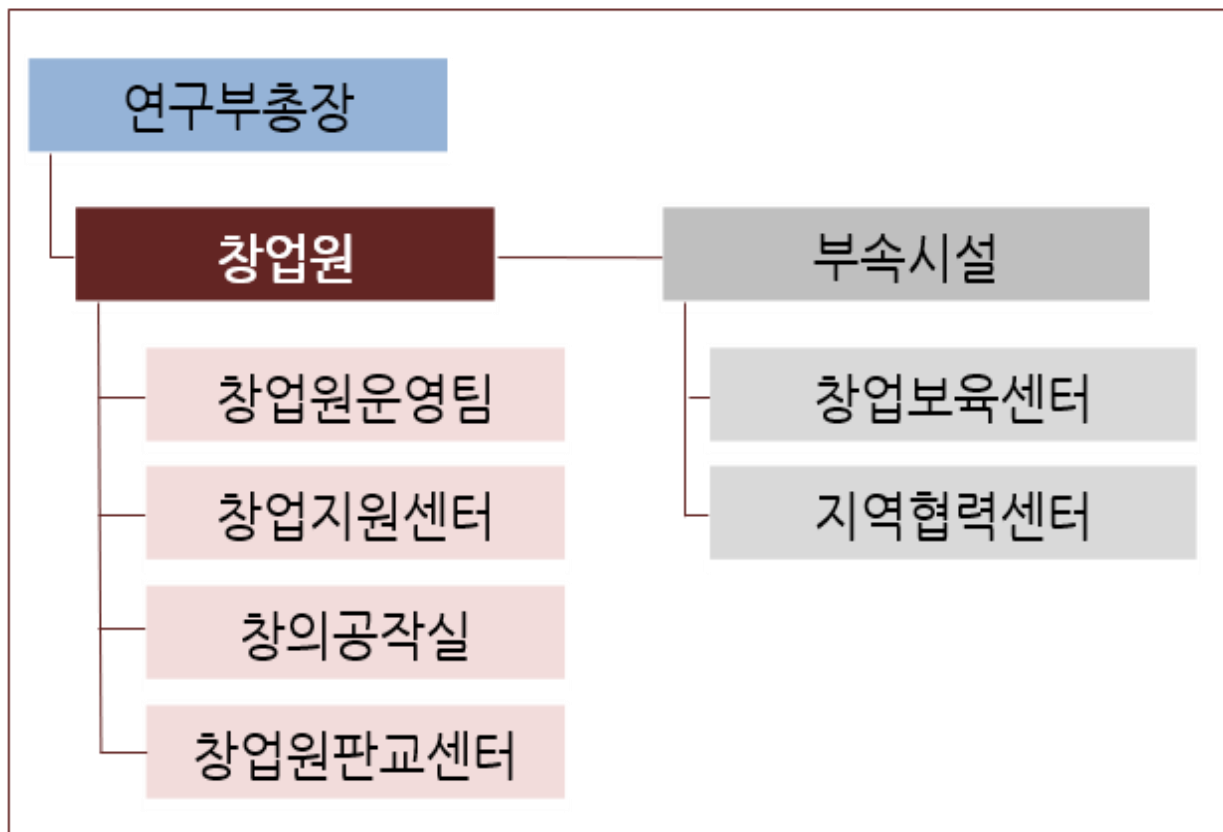
# ■ KAIST 창업원 설립배경

2014년 4월 7일, “Stop Thinking, Start Doing.”이라는

슬로건과 함께 KAIST의 스타트업 활성화를 추구합니다.

Startup KAIST는 캠퍼스 내에 **기업가정신**을 고취하고,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, 나아가 스타트업이 **글로벌**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

## ■ 조직도



※ 창업원판교센터는 지역별 협력센터 확충계획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딩으로 시설이전 및 (가칭) KAIST창업원강남센터로 개칭 예정

# ■ 교원창업

- 교원이 재직/휴직 중 KAIST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경우

① 대표 등 임원(사외이사, 비상근 등기이사, 감사 제외)

② 주식을 30% 이상 소유, 또는 최대주주인 경우

※ KAIST 근무 **이전**의 창업기업인 경우 **창업위원회 승인 필요**

(기타 유형)

- 출자 및 연구소기업 : **학교 지분이 10% 이상**

- 일반창업

# ■ 교원창업 자격

- 3년 이상 근속한 교원
- 3년 미만의 근속 교원 - **학과 내부 검토/인정 필요**
- KAIST 임용 전 창업기업 - **창업위원회 승인 필요**
- 일반창업 → 교원창업 - **기술사업화위원회 승인 필요**

# ■ 교원창업 절차

## 신청

- 교원창업계획서
- 교원창업사업계획서
- 교원창업대상기술설명서
- 규정 및 윤리 이행서약서

창업자 → 창업원

## 상담 및 지원

- 창업상담
- 법률/법무 상담

창업자 ↔ 창업원

## 기술검토

- 창업대상기술 특허사항

지식재산및 기술이전센터

## 인사심의

- 창업휴/겸직 허용

창업원 ↔ 학과(부)

## 법인설립

- 창업 휴·겸직 승인일 기준  
6개월 이내 법인설립  
(법인설립 증빙서류 제출)

창업자 → 창업원

## 인사발령

- 창업휴·겸직 기간 관련사항
- 급여조건 관련 사항

학과(부) → 인사팀

## 기술실시계약

- (법인설립일 기준) 6개월 이내  
기술실시계약 체결

창업자 →  
지식재산및기술이전센터

# ■ 기타 유형

## 임용 전 창업자

- 창업지원센터에 신고 with 관련 서류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주주명부), 임용 후 2개월내
- 창업위원회 승인 필요

## 일반창업 → 교원창업

- 창업지원센터에 교원창업 신청
- 기술사업화위원회 검토 필요



# ■ 겸직 및 휴직 등

## 겸직

- **2년 이내** 신청
- 연장 → 학과 교원인사심의, 교학부총장 승인 필요

## 휴직

- **3년 이내** 신청
- 연장 → **1회(3년) 연장 가능**, 교원인사심의 필요

## 복무

- 겸직 시 **신청 1회당 1년 이내 강의면제 신청 가능**

## 보수

※ 강의면제 신청 시 급여액 조정

겸직 1년차	겸직 2~3년차	겸직 4년차부터	강의면제 미신청
정액급 100%	정액급 70%	정액급 50%	해당없음

# ■ 교원창업자의 의무

## 창업자의 신고

- KAIST 임용 전 창업기업 → 임용 후 2개월 내 창업지원센터에 신고
- \* 제출서류 : 사업자등록증, 법인 등기부등본, 주주명부

## 정보유출 금지

- KAIST 내부 획득 정보 제3자에게 누설/제공 금지

## 변경 신고

- 창업기업 변동사항 발생 → 20일 내 창업지원센터에 신고
  - 상호/대표자, 주요 사업내용, 법인 전환, 사업자등록증 변경
- 기업현황 조사표, 재무제표 → 결산 후 90일 내 창업지원센터에 제출

# ■ 기술 실시 계약

- **법인설립 후 6개월 이내 체결**
- 「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사용규정」에 따름
- 창업기업에게 양도,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부여
- 기술가치창출원과 협의

## [교원창업 기업 기술실시계약 가이드라인]

- ① 특허비용 및 창업기업 지분 납부 방식
- ② 선급기술료 · 경상기술료 · 조건부기술료로 계약하는 방식
- ③ 이 외의 요건으로 계약 가능 –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 및 의결 필요

# ■ 교원창업 지원

## 복무

- 강의면제 신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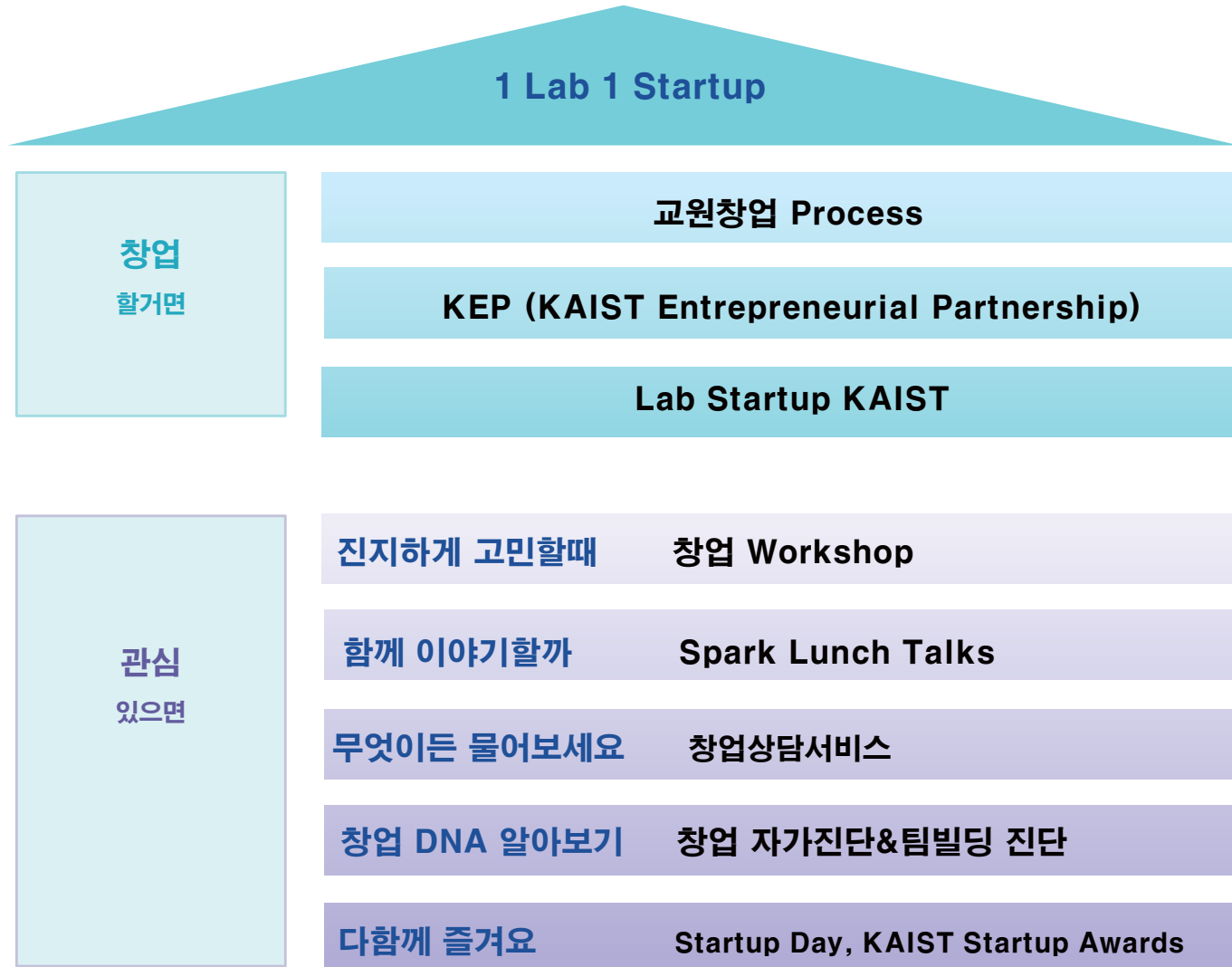
## 연구장비 활용

- KAIST 보유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 사용 등  
(비용은 과학기술원 내부인 기준 적용)

## 창업보육 공간 활용

- 창업보육공간 우선 입주
- 시설 사용비용 감면
- 주소지만 활용 가능 (Virtual Office)

# ■ 지원 프로그램



# ■ KEP

## 『1 Lab 1 Startup』 비전 구현을 위한 교원창업 촉진 프로그램

- 대기업 수요기술 - KAIST Lab 보유기술 매칭 기반 초기 창업 기업의 팀빌딩 및 PoC(기술성·사업성·시장성 등의 검증) 비용 지원

- 사업명 : KEP(KAIST Entrepreneurial Partnership) Program
- 사업기간 : 2022년 5월 ~ 2022년 12월
- 지원대상 : 3년 미만의 기 창업한 KAIST 교원 및 대학원생
- 지원규모 : 사업 단계에 따라 연구비 지원(5천만원~8천만원)

KAIST Entrepreneurial Partnership Program

## KEP PROGRAM

### KEP 프로그램이란?

대기업 수요 기술 - KAIST Lab 보유 기술 매칭을 기반으로 한 초기 창업 기업의 팀빌딩 및 PoC(기술성·사업성·시장성 등의 검증) 비용을 지원하는 1Lab1 Start-up 비전 구현을 위한 교원창업 촉진 프로그램

**기간**  
2022년 5월 ~ 2022년 12월(2회/연) (1차:5월, 2차:6월)

**1차 모집기간**  
2022. 5.4(수) ~ 5.18(수)

**지원대상**  
3년 미만의 기 창업한 KAIST 교원 및 학생(석사/박사)  
\* 과제책임자는 KAIST 전임직 교원에 한함

**지원규모**  
사업 단계에 따라 연구비 지원(5천만원~8천만원)

**선정방식**  
창업기업 발표 후, 창업원 평가위원회의 평가회의를 통해 선정

**지원절차**

<b>1차 모집공고</b> 5.4(수)~5.18(수) 사업정보 및 참가서류 접수	<b>창업기업 선발</b> 5.19(목)~5.26(목) 창업기업 발표 평가 (O팀 내외 선발)	<b>선정 및 연구비 지급</b> 5.30(일)~6월 선정결과 공지	<b>연구과제수행</b> 6~9월	<b>최종발표</b> 9월

\* 선정 후 추후절차 : 협약체결(주관부서-Lab) - 연구팀의 과제계정 Open(-5.31)  
\* 단 선정기업이 없을 경우 선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.  
\* 2차 [6월(모집공고), 7~8월(선정 및 연구비 지급), 8~11월(연구과제수행), 11월(최종발표)] 홍보 및 참가접수는 6월 진행 예정

**지원방법**  
<https://bit.ly/3vCMoRu> 등록

**문의**  
창업지원센터 김두희 E-mail, dhfit@kaist.ac.kr T. 042-350-6494

# ■ Lab Startup KAIST

## Lab 기반 연구 결과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

- 창업 희망 Lab 대상
-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과의 매칭 및 멘토링
-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연구비 지원

- 사업명 : Lab Startup KAIST Program \* 부제: 연구실 창업지원 프로그램
- 사업기간 : 2022년 5월 ~ 2022년 12월
- 지원대상 : KAIST 교원 및 대학원생
  - \* 팀 대표가 KAIST 소속 학생/교원, 실험실 연구기반 아이템에 한함
- 지원규모 : 팀당 3천만원~5천만원



**2022 Lab Startup KAIST**  
연구실 창업지원 프로그램

**기간**  
2022년 5월 ~ 2022년 12월

**지원대상**  
KAIST 교원 및 학생(석/박사)  
\* 팀 대표가 KAIST 교원 및 학생에 한하며, 실험실 연구기반 아이템에 한함  
\* 공고일 기준 해당 아이템으로 기창업한 경우 제외됨  
\* 과제책임자는 KAIST 전임직 교원에 한함

**선정방식**  
서류심사, 실험실 탐방 및 (예비)창업팀 면담 후  
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연구비 지원팀 선정

**지원금액**  
팀당 3천만원~5천만원

**지원절차**

1차 모집공고 >> (예비)창업팀 선발 >> 선정안내 >> 연구과제수행 >> IR 우수팀 선정

사업준보 및 평가업무  
1) 서류 평가  
2) 실험실 탐방 및 면담  
3) 연구비 지원팀 선정  
(O팀 내외 선정)

선정결과 공지  
선정결과 공지

\* 선정 후 추후영차 : 협약제출(창업원-Lab) - 연구팀의 과제개장 Open(-7.31.)  
\* 단, 선정팀이 많을 경우 선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

**지원방법**  
<https://c11.kr/zoud> 등록

**문의**  
창업지원센터 고문석 T. 042-350-6495 E-mail. mskogo@kaist.ac.kr (사업 관련 문의)  
창업지원센터 김두희 T. 042-350-6494 E-mail. dhft@kaist.ac.kr (신청서 제출 및 연구비 문의)



# ■ 창업 법률상담

교원 및 학생 대상 창업 법률 서비스

- 예비 창업가 및 창업가 대상

→ 최호숙 변호사 (창업원 소속 초빙교수)

## 내 용

- 매주 수요일 10:00~16:00, W8 창업상담실
- KAIST Portal 통합예약서비스 온라인 신청
- (1단계) 창업 법무가이드
  - 창업 준비 및 회사설립 단계의 다양한 법률적 쟁점 사항
- (2단계) 창업관련 기본법률지식 교육

회계/세무/노무 등  
순차적 서비스 제공 예정







## ■ 교원창업 FAQ

Q. 교원창업을 할 수 있는 교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?

- 인사규정 3조에서 정한 교수직으로  
정년보장 및 비정년보장 전임직 교원이 해당되며,
- 비전임직 교원 및 연구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
## ■ 교원창업 FAQ

Q. 교원창업 제도가 간소화되었다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나요?

- 창업승인 여부 판단하는 창업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.
- 교원의 휴·겸직은 단과대학 심의 및 총장 승인 절차를 없애고 학과(부)의 인사심의만 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- 법리상 해석의 다툼이 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.

## ■ 교원창업 FAQ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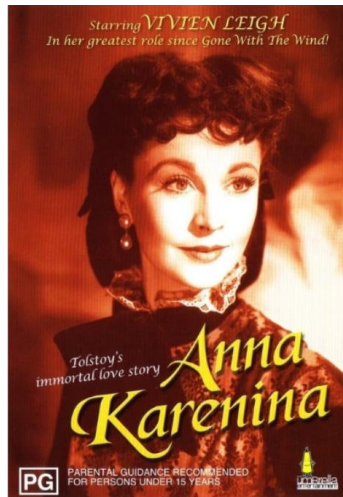
Q. 교원창업을 하면 학교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활동 공간을 제공하는지요?

- **문지캠퍼스 창업보육공간** 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 
다만, 공실여부/공간 규모/용도 등에 따라 입주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창업보육센터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.

## ■ **안나 카레니나** by 톨스토이

- “행복한 가정은 **모두 비슷한 이유로**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**저마다의 이유로** 불행하다.”

“All happy families are **alike**; each unhappy family is unhappy **in its own way.**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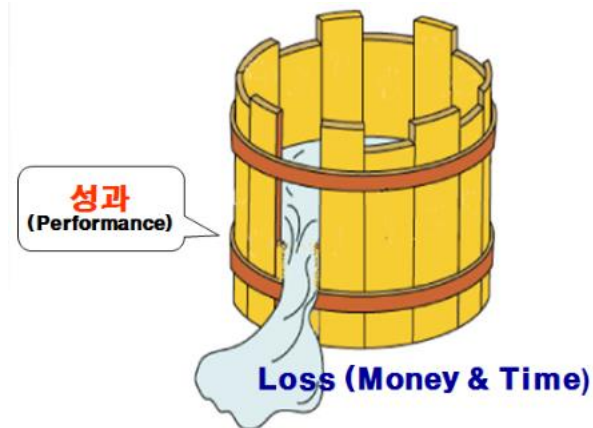


# ■ 안나 카레니나 by 제러드 다이아몬드

: <총, 균, 쇠>의 저자

- “성공한 기업은 **모두 비슷한 이유로** 성공하지만 실패한 기업은 **저마다의 이유로** 실패한다.”

“All successful companies are **alike**; each failed company failed **in its own way**.”



창업에 대해 궁금하시면 ?



KAIST 창업원으로 !

감사합니다